

숫자 설명표	
1	분리적재(Away from): 같은 화물창이나 구획 또는 갑판 상으로 운송될 경우 최소 3미터의 수평 격리를 하여야 한다.
2	격리적재(Separated from): 갑판 아래 적재 시 다른 화물 창 또는 다른 구역에 격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중간 갑판이 내화성 및 내액체성인 경우에는 다른 구획에 격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3	구획실 분리적재(Separated by a complete compartment or hold from): 수직 또는 수평 방향의 완전한 구획 또는 화물창에 의하여 격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갑판이 내화성 및 내액체성이 아니라면 중간의 완전한 구획에 의한 세로 방향의 격리만이 인정될 수 있다.
4	구획실 격리적재(Separated longitudinally by an intervening complete compartment or hold from): 수평방향의 완전한 구획 또는 화물창에 의하여 격리하여야 한다.
X	「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」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고체화물 개별화물 일람표에서 요구할 경우에만 격리한다.

[그림 설명]

상호 반응물을 포함한 포장
내액체성 및 내화성 갑판

※ 수직선은 화물구역 간의 가로 방향 수밀격벽을 나타낸다.